

특수건물의 화재 안전점검과 그 효과



박 헌 식
(위험진단부 부장)

1. 머리말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이하 “화보법”이라 함)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법령에서 제외되었던 전국의 약 7,500개 특수건물이 추가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1973년 법률에 의해 설립된 후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 서울 등 11대 도시지역에 소재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업무와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계몽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협회 설립 당시만 해도 화재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건물과 공장 등이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과 국토의 효율적 개발에 따른 주거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형 산업시설들이 전국에 분포되고 있는 추세다.

그동안 협회의 방재활동이 대도시 지역으로 제한되어, 이들 대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중요시설에 대해 재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금번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협회의 방재업무 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이제 협회는 명실상부한 종합방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특수건물

특수건물이란 화보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들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건물이다.

특수건물을 분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유건물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1,000㎡ 이상인 건물과 부속건물

▷ 학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병원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호텔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공연장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방송시설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전 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판매시설

“도·소매업진흥법”(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됨)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유흥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학교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 공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고층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3. 특수건물 분포

화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특수건물은 1997년 7월 현재 약 7,500건으로 집계되었다. 추가되는 특수건물과 기존 특수건물을 포함한 지역별·업종별 물건 분포는 <표 1> 및 <표 2>와 같다.

4. 특수건물의 안전점검과 그 효과

선진국이 될수록 화재에 의한 피해가 많다. 선진국에는 그만큼 손실 가능한 재화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화재 피해액이 많은 것은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소방력이 우수한 선진국에서 국가총생산(GDP)과 대비한 화재 피해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과학문명의 진보에 따른 신기술과 신물질의 출현은 곧 발화위험과 연소확대 요인의 증가로 볼 수 있고, 또한 화재를 제압하는 소화기술은 늘 연소기술의 후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화보법에서 정한 특수건물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표 1> 지역별 특수건물 현황

지 역	경 기 (서울, 수원, 부천, 성남)	강 원	충 북	충 남 (대전)	전 북 (전주)	전 남 (광주)	경 북 (대구)	경 남 (부산, 울산)	제 주	계
추 가 건 수	2,349	307	596	764	338	395	1,633	1,007	109	7,498
특수건물수	6,498	307	596	1,125	482	759	2,614	2,606	109	15,096
분포비율(%)	43.0	2.0	3.9	7.5	3.2	5.0	17.4	17.3	0.7	100

* () 내 지역은 기존 특수건물 적용지역으로서 편의상 권역별로 묶었음.

<표 2> 업종별 특수건물 현황

업 종	국유	학 원	병 원	11층	호 텔	공 연	방 송	유 흥	학 교	공 장	판 매	APT	계
추 가 건 수	473	10	208	74	221	30	29	4	미정	5,419	370	660	7,498
특수건물수	1,380	73	448	947	466	105	58	27	128	8,717	1,306	1,441	15,096
분포비율(%)	9.1	0.5	3.0	6.3	3.1	0.7	0.4	0.2	0.8	57.7	8.7	9.5	100

* 신규지역의 학교건물은 미화정 상태로서, 집계에서 제외함.



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의 예방과 소방설비에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기·화공·건축·기계·안전 분야 등 전문 기술인력이 실시하는 협회의 안전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 위험물시설 : 위험물 취급 및 저장시설, 특수가연물 등

▷ 전기설비 : 절연저항, 변·발전설비, 옥내배선 및 부하설비 등

▷ 가연성 가스 : 가스 연소기, 용기 및 배관, 화재 폭발위험 등

▷ 연소확대 방지시설 : 방화구획, 내장재 등

▷ 피난시설 :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피난로 등

▷ 방화관리 : 자체점검·정비 및 기록, 발화원 및 인화물 관리, 경비 및 순찰 등

▷ 보험자료 : 건물 구조급수, 소화설비에 따른 보험요율 할인사항, 위험도 측정 등

위와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건물에 대하여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회의 꾸준한 방재활동의 결과, 1973년 협회 설립 당시 25% 정도에 불과했던 방재시설의 평균 양호율이 1990년대에는 70%를 상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실의 방지라는 기본

적인 효과는 물론, 손해의 정도에 따라 조정되는 화재보험 요율이 그동안 두 차례나 인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협회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수건물은 업종별 손해를 고려하여, 10%에서 최고 3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별도로 주어지고 있다.

5. 맺는 말

방재업무에 경제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화재에 의한 손실은 소손이라는 직접적인 피해와 조업중단, 판매량 감소 등과 같은 유형의 간접피해 및 기업 이미지의 손상이라는 무형의 간접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롭게 조정된 특수건물은 하나같이 국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건물이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서울 등 11대 도시를 중심으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가 방재수준을 한차원 높여온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 새로운 특수건물에 대하여서도 재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구와 시험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다.